남원시체육회 회비 규정

2016. 8. 19. 이사회 승인 제정
2020. 4. 27. 이사회 승인 개정
2024. 7. 24. 이사회 승인 개정

남원시체육회 회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조 및 제41조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의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24.>

제2조(회비의 구분) 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회원단체 연회비　　2. 이사회비　　3. 특별회비　　4. 기타 찬조금

제3조(회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단체 연회비”라 함은 본회 정관에 의거 회원단체에서 매 회계년도 마다 본회에 납부해야 할 회비를 말한다.<개정 2024. 7. 24.>

② “이사회비”라 함은 본회 부회장, 이사가 매 회계연도 마다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③ “특별회비”라 함은 본회의 “위촉임원”이 본회 정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재정자립을 위하여 임기 내에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개정 2024. 7. 24.>

④ “기타 찬조금”라 함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단체, 동호인 등이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적용의 범위) 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24.>

1. 회원단체 : 본회 정관 제6조에 의거 가입 승인된 단체
2. 이사회비 : 본회 정관 제27조에 의거 선출, 선임된 임원 (감사제외)
3. 특별회비 : 본회 정관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위촉된 임원

제5조(회비납부의 의무) 임원, 회원단체,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회비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부과) ① 임원, 회원단체,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의 부과 기준표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임원중 도지사, 교육감, 행정부지사, 상임부회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고등학교 교장, 사무처장은 회비를 면제한다.

② 회원단체, 이사회비는 이사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비의 징수방법) ① 연회비, 이사회비는 매년 6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 말까지 회비를 분납할 수 있다.
② 특별회비는 위촉임원이 결정한 방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8조(회비의 수납) ① 회비의 납부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또는 우편환 등으로도 체육회 사무처에 납부할 수 있다.
② 본회가 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기부금 영수증(별지 제1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③ 회비수납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되, 기부금영수증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수불사항을 기록(별지 제2호 서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 ① 회원단체 또는 본회 임원이 당해년도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3월 말일을 기준하여 본회 임원 및 회원단체의 장은 본회 정관 및 각종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모든 직위에서 해임 처리하고, 정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의 권리를 제한한다. ＜개정 2024. 7. 24.＞

제10조(회비의 관리) ① 회비는 특별회계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 회계년도 종료 후 잔액예산은 다음 회계년도로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③ 전항의 기금 또는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④ 회비는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유지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비의 운영) 회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1.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개정 2024. 7. 24.＞
2. 직원의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
3. 임원 단합행사 및 애·경사 등
4. 전북체육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회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9명이상 14명이내,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 7. 24.>
②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비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회비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비 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부 칙 (제정 2016.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회비 부과 기준표

부과대상		연 회 비	특별회비	비 고
위촉위원		-	자율납부	
선임임원	회 장	1,000,000원	-	-
	부 회 장	500,000원	-	-
	이 사	300,000원	-	-
종목단체		300,000	-	-
읍면동체육회장		200,000	-	-

【별지 제1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본회 임원 회비 납부내역

번	년 월 일	직 위	성 명	회 비 내 역				
				계	연회비	이사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회원단체 회비 납부내역

번	년 월 일	단 체 명	대표자명	납부금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